

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안내

□ 기관소개

- 기 관 명: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설립근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 설립목적: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

□ 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관련 근거 및 필요성

- 학교보건법 제9조 개정(2022.6.29.)에 따라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시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9.12.10, 2021.12.28] [[시행일 2022.6.29]][[전문개정 2007.12.14]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인정(붙임 1, 2 참고)
- 관련학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도박문제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나아가서는 학교 내 도박문제 예방분위기 조성 및 확산

□ 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안내

- 예방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운영
 - 온라인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도박문제전문교육 에듀라인(<https://www.kcgp.or.kr/eduline>)
 - 수강신청 절차 : 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 로그인→수강 신청 목록 중 원하는 교육 신청→예방교육 안내 사항 확인 후 예방교육 수강신청→나의 강의실 내 수강 신청한 교육 참여

소요시간	구성	썸네일
32분 49초	인기에능 프로그램 포맷 활용하여 도박에 빠지는 과정에 대한 1대1 대담과 웹드라마를 결합한 형식으로 구성	
29분 26초	영화 '스무살 송이' 대학 신입생 송이는 고등학교 선배 선영과 우연히 만난 후 선영을 따라 교내 동아리방에 가게 된다. 송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아리 키라(K.I.R.A.) 안에서 벌어지는 대학생 도박문제 이야기	

- 오프라인 : 신청 학교 대상 강사파견 후 교육 진행

· 교육신청 절차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예방교육신청
(<https://www.kcgp.or.kr/pp/prevntEdc/2/edcList.do>)

소요시간	구성	교안 표지
1시간 내외	대학생이 도박에 빠진 과정 영상을 활용한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 교육료 : 무료

○ 교육신청문의

- 관할 지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붙임 3. 참고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채널 안내

도박문제 전문상담 문의

전화(헬프라인)
1336
(국번없이 무료)

온라인 상담
넷라인
(<https://netline.kcgp.or.kr>)

문자
#1336

카카오톡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친구추가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관련)

교육대상기관	교육 대상	이수기준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소속 유아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소속 학생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소속 학생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5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비고: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교육참여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을 합산하되, 둘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의 경우 한 번만 합산한다.

$$(\text{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 = \frac{(\text{교육참여인원})}{(\text{교육대상인원})}$$

1. 전문강사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2. 내부 교원·직원 등 소속 직원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3. 온라인 교육
4.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교육대상기관이 인정하는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붙임 3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지역

지역센터	연락처	관할지역
협력지원본부 예방홍보팀	02-740-9052	· 서울
경기남부 센터	031-243-8280	· 경기서남 : 시흥, 안산, 과천, 군포, 의왕, 수원, 화성, 안양, 평택, 오산, 광명, 부천 · 경기동남 : 하남, 성남, 광주, 용인, 안성, 이천, 여주
경기북부 센터	031-919-0814	· 경기서북 : 김포, 고양, 파주, 동두천, 연천, 포천 · 경기동북 : 양주, 남양주, 구리, 의정부, 가평, 양평
부산울산 센터	051-441-2190	· 부산, 울산
광주전남 센터	062-369-1368	· 광주, 전남
대전충남 센터	042-867-0075	· 대전, 충남
대구센터	053-256-1336	· 대구
인천센터	032-438-6565	· 인천
강원센터	033-822-2011	· 영동남부: 강릉,동해,삼척,태백 · 영동북부: 고성,속초,양양 · 영서남부: 원주,횡성,평창,영월,정선 · 영서북부: 춘천,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정선도박 문제 회복센터	033-592-8891	-
전북센터	063-255-1336	· 전북
세종충북 센터	043-275-0051	· 세종, 충북
경남센터	055-264-7082	· 경남
경북센터	054-256-1530	· 경북
제주센터	064-751-1336	· 제주